

의안번호	제 71 호
의 결 연 월 일	2018년 월 일 (제 369 회)

**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8년 10월 3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1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8년 10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제2충북학사 건립으로 3개 학사(서울2, 청주1)의 명칭 통일 및 도민 이용 편의 등을 위해 학사 시설명칭 변경 필요
- 충북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 용어 일부 수정

2. 주요내용

- 충북학사 시설명칭 변경(안 제1조, 안 제2조)
 - (당초) 충북학사 ⇒ (변경) 충북학사 서서울관
 - (당초) 충북학사 청람재 ⇒ (변경) 충북학사 청주관
 - (가칭) 제2충북학사 ⇒ 충북학사 동서울관
- 현행 조례의 용어를 일부 수정함
 - '운영법인'을 '법인'으로 수정(안 제4조, 안 제6조, 안 제7조, 안 제8조)
 - '공유재산 및 물품'을 '공유재산 등'으로 수정(안 제5조, 안 제6조)
 - '책무'를 '의무'로 수정(안 제6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체 : 해당없음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충북학사 및 농촌출신학생기숙사인 충북학사 청람재”를 “충청북도학사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충청북도학사(이하 “학사”라 한다)는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에 두며,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충북학사 서서울관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25
2. 충북학사 동서울관: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75
3. 충북학사 청주관: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61-7

제4조 중 “운영법인”을 “법인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공유재산 및 물품”을 “공유재산 및 물품(이하 “공유재산 등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운영법인의 책무)”를 “(법인의 의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운영법인”을 “법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운영법인”을 “법인”으로, “공유재산”을 공유재산 등“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“운영법인”을 각각 “법인”으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운영법인”을 “법인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운영법인”을 “법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운영법인”을 각각 “법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<u>충북학사 및 농촌출신학생기숙사인 충북학사 청람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충청북도학사</u>----- ----- ----- -.</p>
<p>제2조(위치) <u>충북학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25(당산동) 충북미래관 내에 두고 충북학사 청람재(이하 "학사"라 한다)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61-7(지북동)에 둔다.</u></p>	<p>제2조(명칭 및 위치) <u>충청북도 학사(이하 "학사"라 한다)는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에 두며,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충북학사 서서울관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25</u> 2. <u>충북학사 동서울관: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75</u> 3. <u>충북학사 청주관: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61-7</u>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운영위탁) 학사운영은 재단법인 충북학사(이하 “<u>운영법인</u>”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 운영한다.</p>	<p>제4조(운영위탁) ----- ------(이하 “<u>법인</u>”이라 한다)-----.</p>
<p>제5조(운영지원)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학사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<u>공유재산 및 물품</u>을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운영지원) ----- ----- ----- <u>공유재산 및 물품</u>(이하 “<u>공유재산 등</u>”이라 한다)을----- -----.</p>
<p>제6조(<u>운영법인의 책무</u>) ① <u>운영법인</u>은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운영법인</u>은 지원받은 금전 및 <u>공유재산</u>을 학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운영법인</u>은 위탁운영 기간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</p> <p>④ <u>운영법인</u>은 이 조례 및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⑤ <u>운영법인</u>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<u>법인의 의무</u>) ① <u>법인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법인</u>은 ----- <u>공유재산 등</u>----- -----.</p> <p>③ <u>법인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<u>법인</u>----- -----.</p> <p>⑤ <u>법인</u>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사업승인 등) <u>운영법인</u>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7조(사업승인 등) <u>법인</u>----- ----- ----- 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감독)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사의 운영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<u>운영법인</u>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<u>운영법인</u>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<u>운영법인</u>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감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u>법인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u>법인</u>에게-- -----<u>법인</u>은 ----- -----.</p>